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37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- 나. 기타 제명, 인용 표시, 약칭 등 수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~10. 3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, 제명, 인용표시, 약칭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제1호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)를 삭제함.
- 조례안 전체에서 제명, 인용표시, 약칭 등을 수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지난 '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「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를 발표하며 2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, 본 조례안과 연관된 사항은 **▲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에 관한 것임.**
- 본 조례 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문 제1호는 “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1)와 정산

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”고 명시되어 있음.

- 한편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, 증거 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하게 하고 있으나, 본 조례를 적용하면 운임·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.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,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- 참고로, 우리 구(區)에서는 동 조례 제4조제1항과 무관하게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.

1) 제8조의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 공무원 여비 규정

제8조의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2. 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1. 31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22.>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39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
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구 전략사업 총괄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
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시국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(안 제4조
의2, 제6조)

- 1)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전담부서 신설: 미래공간과
- 2) 청년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: 청년정책과
- 3)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향상을 위한 부서 통합: 일자리경제과

다.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 및 부서 명칭 변경(안 제4조의2, 제11조, 제14조)

- 1) 도시국 → 도시공간국
- 2) 푸른도시과 → 정원도시과
- 3) 감염병관리과 → 생활건강과

라.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

(안 제4조의2,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)

- 1) 푸른도시과: 생활환경국 → 미래도시국
- 2) 주차문화과: 안전교통국 → 생활환경국
- 3) 전산운영팀: 홍보미디어과 → 총무과
- 4) 민방위팀: 도시안전과 → 자치행정과
- 5) 정보통신팀: 홍보미디어과 → 도시안전과
- 6) 동물보호팀: 지역경제과 → 생활건강과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10.25. ~ 11.04./1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의2(미래도시국)를 신설하여 “미래공간과”, “청년정책과”, “정원도시과”를 둬. 미래도시국에 두는 부서와 관련하여 현행 생활환경국에서 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 오고 있는 “푸른도시과”의 명칭을 “정원도시과”로 변경하고 미래도시국으로 이관해 옴. 또한,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의 업무를 위한 “미래공간과”와 청년지원 및 소통 강화 업무를 위한 “청년정책과”를 신설함.

 - 안 제5조(행정국)는 행정국에서 두는 부서의 분장과 관련하여 현행 “구정홍보, 구정의 정보화,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”에 관한 사항을 “구정홍보”로 변경함. 또한, “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, 지역협치, 마을공동체 지원”을 “국민운동단체 지원, 민방위”로 변경함. 이에 따라 “정보통신”에 관한 사항은 “안전교통국”으로 이관함.

 - 안 제6조(기획재정국)는 기획재정국에서 두는 부서와 관련하여 현행 “지역경제과”와 “일자리정책과”를 통합하여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함.

 - 안 제9조(생활환경국)는 생활환경국에서 두는 부서의 분장과

관련하여 현행 안전교통국에서 “주·정차 지도 단속, 교통시설 설치, 주차장에 관한 사항”을 담당하는 “주차문화과”의 업무를 “생활환경국”으로 이관해 옴.

- 안 제11조(도시국)는 제목을 “도시공간국”으로 변경하고, “도시국장”을 “도시공간국장”으로 변경함.

-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.

※ 주요내용 현황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국 편제 변경		
부서 통합	① 지역경제과+일자리정책과	① 일자리경제과
국·부서 신설		
국·부서 명칭 변경	① 도시국 ② 푸른도시과 ③ 감염병관리과	① 도시공간국 ② 정원도시과 ③ 생활건강과

구분	업무	변경 전	변경 후
업무 이관	정보통신	홍보미디어과	도시안전과
	· 구정의 정보화 · 전산운영	홍보미디어과	총무과
	민방위	도시안전과	자치행정과
	반려동물	지역경제과	생활건강과
	· 공원의 조성 및 관리 · 녹지보전 · 조경계획·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 · 수변생태복원 및 수변공원화, · 정원조성 및 관리 · 정원여가문화 활성화	생활환경국	미래도시국
	· 주·정차 지도 단속 · 교통시설 설치 · 주차장에 관한 사항	안전교통국	생활환경국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¹⁾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국을 신설하여 ▲미래공간과 ▲청년정책과 ▲정원도시과²⁾를 두었으며,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요내용과 같이 업무 이관 및 국·부서 명칭을 변경함.
-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에 의하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”, 이에 따른 “행정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”로 정하도록 되어있음.
- 아울러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

1) ▲주거 도시 ▲경제 도시 ▲미래교육도시 ▲문화도시 ▲복지도시

2) 출처: 언론보도 및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회의록

<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 관련
“푸른도시여가국”→“정원도시국” 명칭
변경에 대한 쟁점사항 >

□ ‘정원도시국’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이견

◦ 동 명칭은 알기 쉽고, 간결한 의미가 아니며, 현재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 중 일부만을 의미하거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 범위 개념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용어임.

※ 산사태 안전·동물보호·생태계·생물다양성 등 배제, ‘정원’은 조경·녹지와 관계된 부차적 개념 등

정」이 2024년 3월 29일 개정(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함.) 및 시행됨에 따라 실·국·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, 종전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³⁾에서 “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”는 조문에 “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”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과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도시국 신설이 가능하 다 할 것임.

- 다만, 본 안건에 따라 “지역경제과”, “일자리정책과”를 통합하여 “일자리경제과”로 부서가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2월 22일 본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“일자리경제과”에서 두 과로 분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. 아울러, 신설 및 변경되는 국의 명칭이 “미래도시국”과 “도시공간국”으로 두 국 모두 “도시”가 들어가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짐.
- 한편, 본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, 구의회 차원에서 미래도시국 담당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를 개정해야 할 것임.

3)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 다만,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 다만,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38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안 별표 3)

구분	합 계	구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492	952	36	114	390
정무직	1			1	
일반직	1,487			1,487	
일반 직	3급	1	1	-	-
	4급	8→9 (+1)	6→7 (+1)	1	1
	5급	66→67 (+1)	33→34 (+1)	2	13
	6급 이하	1,411→1,409 (△2)	1,411→1,409(△2)		
	전문 경력 관	1		1	
별정직	4			4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10.25. ~ 11.04./1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도시국 및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 총수는 동일하나 세부사항으로 일반직 4급 1명 및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,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감원함.

○ 검토결과

-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 본 회의에 동시에 제출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개정내용에 따라 국, 과 신설(미래도시국,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) 및 통합(일자리경제과)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일반

직 4·5급 1명을 증원, 일반직 6급 2명을 감원함.

-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으며,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.
- 2024년 우리 구(區) 기준인건비 총액은 1,458억 원이고, 2024년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,535억 원이며 이번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107,353천 원이 순증할 것으로 추산함.(비용추계서 참조)
- 한편,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'22년 10월 31일 3가지 중점사항을 둔 「보통교부세²⁾ 혁신방안」을 발표함. 그 중 '지방재정 전전화'를 살펴보면 자율적인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우 200%특전(인센티브)을 부여하고,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(페널티) 한다는 사항임.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「지방교부세법」 시행규칙이 개정(개정. 2023.12.29.)되면서 2025년 산정분부터 전전년도(2023년)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초과집행(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기준) 시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

1)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2)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,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함. 참고로 우리 구(區)는 2024년까지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님.

가 주어지기에, 기준인건비 집행액이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연도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현황

- 전체 인건비

(단위:천 원)

연 도	기준인건비(A)	편성액(B)	집행액(C)	기준인건비대비 초과집행액(C-A)	기준인건비대비 집행율(C/A)
2024	145,831,004	153,522,090			
2023	140,897,523	140,225,344	133,784,480	-7,113,043	95.0%
2022	136,323,557	133,289,584	128,018,680	-8,304,877	93.9%
2021	132,070,648	130,342,804	122,486,297	-9,584,351	92.7%
2020	132,022,841	127,168,024	121,628,148	-10,394,693	92.1%

- 또한,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조정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 하기에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: 세출예산 순증가 (인건비)

-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

직급	4급	5급	6급 이하	비고
조정인원(명)	+1	+1	△2	

2. 비용추계 기준: 일반직 인건비

- 비용추계기간: 12개월(2025. 1. ~ 12.)
- 비용추계내역: 기본급+직급보조비+국민건강보험금+연금부담금+수당
- 비용추계 산출식: [4급(1명) 인건비+5급(1명) 인건비]-7급 인건비(2명)
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비용추계 인건비	직급별 평균 인건비			비고
		4급(연봉제)	5급(연봉제)	7급(13호봉)	
합 계	+107,353	143,172	126,229	81,024	
기본급	+120,541	104,643	93,012	38,557	
직급 보조비	+3,480	4,800	3,000	2,160	
국민건강 보험금	+2,906	3,872	3,448	2,207	
연금 부담금 등	+18,957	25,253	22,490	14,393	
수당	△38,531	4,604	4,279	23,707	

※ 수당: 시간외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성과상여금 등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

제8조(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)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1. 세출 효율화	
반영항목	산정방식
가. 인건비 건전 운영	<p>① $(1 -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} \div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}) \times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절감액} \times 200\%$</p> <p>※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·사회복지·생활안전 분야, 공무원(무기계약)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</p> <p>※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※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② $(1 -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} \div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}) \times \text{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}$</p> <p>※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·사회복지·생활안전 분야, 공무원(무기계약)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</p> <p>※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※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※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</p>